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 - 13
------------	---------

제출년월일 : 2014. 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공포 2013.6.21, 시행 2013.12.2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을 정하며,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신설(안 제17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요율 적용 항목 신설(안 제25조)

-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적용

다.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안 제31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 연 3%(이자율을 조례에 위임)

* 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연 6%

- 라. 매각대금 및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안 제34조, 제34조의2)
 -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연 4%에서 연3%로 인하
- 마. 개인 소유 건물이 점유한 구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기준일 완화(안 제36조)
 - 1989년 1월 24일 → 2003년 12월 31일
- 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표현 수정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4. 1. 16 ~ 2. 5(제출의견 :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제외법령
 - 4) 2014년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2.11)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기함”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9조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 수익 허가”를 “사용 · 수익허가”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 · 수익허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마포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 · 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4호가목 중 “지하1층”을 “지하 1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하2층”을 “지하 2층”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을 “지하 3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지하1층”을 “지하 1층”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하2층”을 “지하 2층”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을 “지하 3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30%”를 “30페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하2층”을 “지하 2층”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부계약 연월일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4퍼센트”를 각각 “3퍼센트”로 한다.

제34조의2 중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분의 1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1989년 1월 24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축시”를 “신축 시”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신축시”를 “신축 시”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축시”를 “신축 시”로 한다.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한다.

제54조 중 “이에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비중”을 “운영비 중”으로 한다.

제62조 제1항 중 “영 제58조”를 “제58조”로 한다.

제64조 제1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를 “기부심사위원회의”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을 “변상금은”으로, “같다”를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조(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제34조의2, 및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중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

----- 공유재산-----

-----.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

- 공유재산-----

-----.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 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 수익허가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8조(사용 · 수익허가) -----

산을 사용 · 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5. 마포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생략)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 사용 · 수익허가-----
-----.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
· 수익허가-----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

-----.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 라 한다)-----

-----.

6.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생 략)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 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 11. (생 략)

⑥ (생 략)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 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초 · 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 외국인투자
기업 -----
-- 공유재산-----

4. ~ 11.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p>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p> <p>가. <u>지하1층</u>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나. <u>지하2층</u>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다. <u>지하3층</u>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p> <p>가. <u>지하1층</u>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u>지하2층</u>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u>지하3층</u>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u>30%</u>를 적용한다.</p>	<p>4. -----</p> <p>-----</p> <p>가. <u>지하 1층</u>-----</p> <p>-----</p> <p>나. <u>지하 2층</u>-----</p> <p>-----</p> <p>다. <u>지하 3층</u>-----</p> <p>-----</p> <p>5. -----</p> <p>-----</p> <p>가. <u>지하 1층</u>-----</p> <p>-----</p> <p>나. <u>지하 2층</u>-----</p> <p>-----</p> <p>다. <u>지하 3층</u>-----</p> <p>-----</p> <p>④ -----</p> <p>-----</p> <p>-----</p> <p>-----</p> <p>-----</p> <p>-----</p> <p>-----</p> <p>-----</p> <p>----- . -----</p> <p>-----</p> <p>----- 30퍼센트-</p>
--	---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 ⑥ (생 략)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31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지하 2층 -----

제31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④ (생략)

<신설>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부계약년월일	2. 대부계약 연월일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u>4퍼센트</u>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 <u>3퍼센트</u>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u>4퍼센트</u>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u>3퍼센트</u>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 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 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 액에 연 <u>4퍼센트</u> 의 이자를 붙여	③ ----- ----- ----- ----- ----- <u>3퍼센트</u> -----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34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국
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
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
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
제8항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
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
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
다.

1. ~ 4. (생 략)

제3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
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

-.

제35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

1. ~ 4. (현행과 같음)

제3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
다.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마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
별시·광역시의 같은 지역에
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
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
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
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
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
한 경우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
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
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

1. 2003년 12월 31일 -----

2. -----

2분의 1 이상

3. (현행과 같음)
4. -----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마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5. ~ 7. (생 략)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 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

----- 2003년 12월 31일 -----

----- . -----

5. ~ 7.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 ① -----

-- 신축 시 -----

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 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 를 건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2조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축시 -----
----- 별표 1-----

-----.

③ -----
- 신축시 -----

-----.

제44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서울특

별시 건축조례」-----

-----.

제54조(비품의 관리) -----

-----.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2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장이 제61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 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4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 등재
하고 관리하여야 ---.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운영비 중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2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

----- 제58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기증품의 취득) ① -----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생략)

제8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
-----.

② ----- 기부심사위원회 -----
-----.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 변상금은
-----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88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
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